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9.8)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순 화]

목 차

1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8
3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4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	30
6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7
7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3
8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49
9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3
10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7
11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0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8.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4조)
- 나.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함(안 제5조)
 - 1)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함
 -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함(안 제6조)

- 1) 당연직 8명, 위촉직 4명 ⇒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 2)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9,412백만원 확보

다. 협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7. 27.~8.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기금의 용도)에서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

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현행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발생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거창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은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2. 폐지이유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2020. 7. 1 전부 개정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2)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7. 22.~8.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2020. 7. 1 전부 개정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기존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졌음)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21. (생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2020. 7. 1. 전부개정(의원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 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노후 상·하수도 설비 정비공사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
 6.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
 7.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
 8.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일부 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신청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사업예정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 **전부개정 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 2008.12.31 조례 제1911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현행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 **제정이유(제정 2015년 6월 10일 조례 제2252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 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택의 소유자
 -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제6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

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새로운 시설물 설치는 제외한다.

1. 차도·보도, 주차장, 그 밖의 부지의 유지보수
2. 보안등의 유지보수
3.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4. 상·하수도의 준설 및 유지보수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노인정·경로당의 유지보수
7. 조경시설의 관리(수목식재 제외)
8. 개방을 위한 담장 등 철거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명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 그 내용을 군수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5년간은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명서류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부

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7일(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간은 별도 기산함) 안에 끝내고, 이상이 없으면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및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08. 25.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김종두 · 최정환 · 심재수 · 권재경 · 이재운

박수자 · 김향란 · 권순모 · 이홍희 · 신재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09. 1.

2. 제정이유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 1)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2) 가업승계 농업인 :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거창

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 2) 전문인력 육성사업
-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
-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 6)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신청 및 선정, 지원제한 등(안 제6조,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8. 26. ~ 9. 1.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필요시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는 농림,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사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교육·건강·컨설팅사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들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 임.
-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6.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제목개정 2013. 3. 2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2. 개정이유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부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 정비
 - 1) 제조업체 등 ⇒ 기업(안 제1조·제3조·제4조)
 - 2) 기업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 3) 근로자 ⇒ 노동자(안 제1조~제4조)
 - 경상남도 권고사항
- 나.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29세 ⇒ 34세
- 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서식은 규칙으로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7. 2.~7.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아울러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 따르면,

- “보조금 지출의 요건은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라는 것이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에만 규정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기술적, 전문적이어서 조례로 자세히 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20-0024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질의요지의 내용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광주광역시 북구의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이하 “북구조례”라 함)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자생단체, 동이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시행규칙안」(이하 “북구조례 시행규칙안”이라 함) 제2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북구조례 제15조를 근거로, 주 2회 이상 청결 관련 활동을 한 단체의 경우 회원 1인당 3시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1만원으로 계산하여 실비를 지급하되, 한 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월 2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외의 단체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의 부녀회 등 북구 조례 제15조에서 “자생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민간단체”라 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9. 17. 의견제시 19-0274, 2018. 5. 25. 의견제시 18-0094 등 참조).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의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보조금 지출의 요건은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라는 것이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에만 규정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복구조례 제15조에서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자생단체, 동이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단체의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례 제1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복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상의 근거 및 위임에 따라 복구규칙안 별표 1에서 1개 민간단체에 대한 월별 보조금 지출금액 상한 등 복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조금 지출의 근거에 관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14-0035 중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기술적, 전문적이어서 조례로 자세히 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행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2012.06.22 조례 제20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내 제조업체 등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사랑마음을 고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의 기준)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내 출신(출생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군내인 사람)이거나 군내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 제조업체 등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추천 등) ① 제조업체 등에서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4.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② 제1항제1호·제5호는 공적 장부의 확인으로 같음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심사)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 심사 순위는 장기근무경력자,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납부액) 순으로 한다.

② 군수는 각 제조업체 등에서 추천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확인과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제5조(지원 범위 및 시기) 장려금은 한 사람당 한번만 500천원을 지급하되,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자명부의 비고란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요원 위촉) ①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군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요원은 애향심으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상남도 노동정책과-3964호(2020.7.16.)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용어 일괄정비(근로→노동) 협조 요청

1. 경상남도는 2019년 12월 26일 노동자 권익 향상과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였습니다.

○ 일괄정비 용어 : 근로 → 노동

2.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노동'은 육체노동에 한정된 의미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나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의미로 노동자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용어입니다.

3. 전 실·과·소 및 시·군에서는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용어 정비사항]	
-노동관련 시설 명칭(간판, 홈페이지 등)	
-시·군 홈페이지 직원 업무분장	
-'21년 예산 편성 시 사업 명칭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 시 용어 사용	
-노동관련 행사 개최 등	
※ 단,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정의된 용어, 국가사업의 명칭·지침을 따라야 하는 사업은 제외	

붙임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8.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2. 제안이유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생업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사 업 비 : 350백만원(증 100백만원)
- 2020 추경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당초 예산액	변경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250	350	350	-	-	350	-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4. 부서의견

- 최근 코로나 19로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 확대로 경남신용보증의 운용배수 및 손실 증가가 예상이 되어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운용배수의 축소를 위해 거창군에 출연금 1억 5천만을 추가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 경남 타시군의 추가 출연금 형평성과 거창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5.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 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 붙임
- 경남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 : 붙임

6. 검토의견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15.8%, 경남도 28.7%, 시·군 6.3%, 금융기관 45.7%, 기업체 등이 3.5%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재단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경남 18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20년 2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7. 참고자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연기관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www.gnsinbo.or.kr			
주요연혁	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 8. 7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2명		99명	13명			
임원 (‘20. 8.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前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	‘18.11.1~’20.10.31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	現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9.4.25~			
		김**	現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	‘18.4.24~			
		김**	現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19.6.1~’21.5.31			
		한**	現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19.6.1~’21.5.31			
		김**	現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19.6.1~’21.5.31			
		임**	前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19.6.1~’21.5.31			
	감사	장**	現장** 회계사무소대표	‘18.9.1~’20.8.31			
고문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200,078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4,137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248,812 (자산 총액)
	예산액 ²⁾	56,740	71,137	88,155		부채	48,734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4,123	7,550	9,450		자본 ¹⁾	200,07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039			39,626		△ 18,587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신보 출연금 정부 3차 추경 확보에 따른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요청

1. 소상공인정책과-4181호(2020.5.21.) 「경남신보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요청」와 관련됩니다.
2. 우리 도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 확대로 인해 운용배수 및 손실 증가로 공급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시·군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하고, **도 제3차 추경 시 출연금 4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0년도 도 출연금 : 당초 40억원→추경 80억 원, 증40억원)
3. 또한 정부에서는 지역재단의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정부 3차 추경에 80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3차 추경 의결('20.7.3.) 이후 '20년 말까지 출연금만을 기준으로 20%를 매칭 보조** 할 계획으로, 지자체에 출연금 최대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지역신보재단 지자체 출연사업 관련 업무협약」 ('20.7.20. 중기부)
4. 시·군에 추가 요청한 출연금(50억 원)은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실적 점유율에 따라 산출한 최소 필요액으로 **전 시·군에서는 '20년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군별 추가 출연금 산출내역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창원시장(경제살리기과장), 진주시장(일자리경제과장), 통영시장(지역경제과장), 사천시장(지역경제과장), 김해시장(지역경제과장), 밀양시장(일자리경제과장), 거제시장(조선경제과장), 양산시장(일자리경제과장), 의령군수(일자리경제과장), 함안군수(경제기업과장), 창녕군수(일자리경제과장), 고성군수(일자리경제과장), 남해군수(지역활성과장), 하동군수(경제전략과장), 산청군수(경제전략과장), 함양군수(일자리경제과장),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합천군수(경제교통과장)

주무관	소상공인지원 담당	소상공인정책 전결 2020. 7. 27. 과장
-----	-----------	---------------------------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과-6301 (2020. 7. 27.)	접수	경제교통과-83484 (2020. 7. 27.)
----	-----------------------------	----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경남도청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433 팩스번호 055-211-3419 / gurumi@korea.kr / 대국민 공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온라인으로 문서제출 "문서24"

붙임

시군별 추가 출연금(50억 원) 산출내역

(’20.05.08.기준,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현황(’20.5.8. 기준)						점유율	추가 출연금	당초 출연금
	대출실행(A)		심사진행중(B)		합계(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4,601	350,051	22,230	454,550	36,831	804,601	100.0%	5,000	5,100
창원시	4,610	116,756	7,405	163,537	120,15	280,293	34.8%	1,700	1,100
진주시	1,609	33,207	1,931	34,123	3,540	67,330	8.4%	400	400
통영시	481	12,007	1,389	31,910	1,870	43,917	5.5%	300	300
사천시	720	14,455	550	10,142	1,270	24,597	3.1%	150	250
김해시	1,773	43,312	3,515	71,113	5,288	114,425	14.2%	700	550
밀양시	564	15,301	529	12,228	1,093	27,529	3.4%	200	200
거제시	1,296	29,817	2,167	37,183	3,463	67,000	8.3%	400	350
양산시	1,068	24,656	2,015	42,531	3,083	67,187	8.4%	400	350
의령군	51	1,098	122	2,910	173	4,008	0.5%	50	100
함안군	228	5,072	788	14,747	1,016	19,819	2.4%	100	250
창녕군	653	17,382	80	2,031	733	19,413	2.4%	100	150
고성군	255	5,404	574	10,988	829	16,392	2.0%	100	150
남해군	252	5,612	339	4,998	591	10,610	1.3%	50	150
하동군	158	3,256	176	2,807	334	6,063	0.8%	50	150
산청군	99	2,177	127	1,871	226	4,048	0.5%	50	150
함양군	99	2,526	114	2,422	213	4,948	0.6%	50	100
거창군	553	14,746	293	6,716	846	21,462	2.7%	150	250
합천군	132	3,267	116	2,293	248	5,560	0.7%	50	150

* 산정기준 :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실적 점유율에 따라 안분

시·군별 출연 현황

○ 출연금

(20.6.30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출연금					이월 손익금	계
	정부	경남도	시·군	금융기관	기업체 등		
금액	419.8	762.9	168.0	1,214.9	94.7	△368.8	2,291.5
구성비	15.8%	28.7%	6.3%	45.7%	3.5%	-	100%

- 재단 출연금에 대한 비중을 볼 때 신용보증으로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영위하는 시·군의 출연금 비중은 6.3%로 저조한 실정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2. 제안이유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 나. 위치
 -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 다. 사업내용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
- 라. 위탁대상 사무
 - 조합원간 농작업 구인·구직 알선
 - 조합원간 농작업 출퇴근 운송사업
 - 관외 인력유치·알선 및 지원사업

- 농작업 참여자 상해보험 지원
 - 농작업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 마. 현 민간위탁 현황
- 수탁자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바. 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간)
 - 수탁자 선정
 -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조합원(농가, 농작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적기 인력알선에 유리
- 관외인력 유치로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6조, 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4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3조, 6조

다. 향후계획

- 2020. 9. : 거창군의회 동의안 제출
- 2020. 9.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0.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2020. 1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수탁 협약서 공증

라. 예산조치 : 위탁운영비 연 150백만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으로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농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인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과 농촌인력난의 해소를 위하여 농촌 인력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민간 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운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2조(적용범위)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현황

- 센터의 시설과 위치
 -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 거창읍 시장1길 20
 -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 사업비 : 150,000천원(도비 30,000, 군비 120,000)
- 운영방법 :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2014년 최초 위탁
- 수탁자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변동규)

합계(명)	농가	농작업자	현물출자자	직원	자원봉사자
457	186	265	4	1	1

- 추진근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 위치도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사무실



농업근로자 숙박시설

□ 그간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연도별	위탁비(천원)	운영현황
2014	90,655(군비)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최초 위탁운영
2015	106,555(국 15,900 군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국비 사업
2016	120,655(국 30,000 군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국비 사업
2017	140,655(국 50,000 군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국비 사업
2018	150,000(군비)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2019	150,000(도 36,000 군 114,000)	도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
2020	150,000(도 30,000 군 120,000)	도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

※ 2014년 ~ 2020년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 연도별 사업실적

(2020. 7월말 기준)

연도별	농작업 알선실적 참여인원(명)			출퇴근 차량운행						숙 소 이용자 (명)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운행 횟수	수송 인원	
2014	9,288	8,859	429	164	1,652	164	1,652	-	-	숙 소
2015	10,023	9,844	179	220	2,146	220	2,146	-	-	공 사
2016	10,974	9,974	1,000	238	2,662	218	2,162	20	500	500
2017	11,013	9,822	1,191	305	3,491	284	2,840	21	651	540
2018	10,128	9,358	770	240	2,700	225	2,250	15	450	320
2019	10,968	10,206	762	205	2,232	191	1,910	14	322	300
2020	7,665	6,995	670	88	1,090	74	740	14	350	320

○ 연도별 참여농가 현황

(2020. 7월말 기준)

연도별	주요작물별 현황				
	계	사과	오미자	딸기	기타
2014	107	85	6	10	6
2015	91	71	2	10	8
2016	116	96	3	10	7
2017	115	89	4	10	12
2018	98	80	2	10	6
2019	102	86	-	10	6
2020	76	63	-	8	5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간)
- 위탁금액 : 150백만원(2021년)
- 대 상 : 위탁자 『거창군』, 수탁자 『선정기관』
- 위탁사무
 - 가.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 나.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 다.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사업
 - 숙식제공,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등
 - 보험가입사업, 안전용품 제공
 -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라. 그 밖에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주요내용
 - 협약 보증을 위하여 공증 시행
 - 위탁사업비는 매년 책정하되 연 사업비는 반기별 분할 지급
 - 정산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협약 해지사유 발생 시 협약 해지

□ 향후 추진계획

- 2020. 9. : 거창군의회 동의요구안 제출
- 2020. 9.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0.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2020. 1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수탁 협약서 공증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8.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2. 제안이유

유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 나.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구간 노상주차장(43면)
- 다. 위탁대상 사무
 - 주차안내 및 지도
 - 주차요금 징수
- 라. 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위탁기간 : 2019. 9. 1. ~ 2020. 8. 31./ 1년간
 - 선정방법 : 입찰

마.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0. 11. 23. ~ 2023. 11. 22. / 3년간
- 선정방법 : 입찰
- 운영시간(연중무휴)
 - ┌ 4월 ~ 10월 : 08:00 ~ 20:00
 - └ 11월 ~ 3월 : 09:00 ~ 19:30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43면(525㎡)
- 주차요금

금지	시간	1구획 최초 30분까지	최초 30분 초과 15분당	회수권제 1일	정기주차권 (월)	
					주간제	야간제
		500	250	5,000	50,000	35,000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비용 절감, 노상주차장 관리에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8조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다. 향후일정

- 입찰공고 : 2020. 10.
- 위탁운영 : 2020. 11. 23. ~ 2023. 11. 22. / 계약일로부터 3년

라. 예정가격 : 3,111,120원

- 위탁료는 예정가격을 매년 산정하여 낙찰가율에 따라 부과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유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주차장법」 제8조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군수가 관리하거나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서는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그 밖에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 하고 있음.
- 아울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유료 노상주차장을 민간 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북부사거리 ~ 중앙교 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위탁운영 계획

- ◆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재 추진하고자 함

I 위탁운영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8조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II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0. 11. 23. ~ 2023. 11. 22.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선정방법 : 입찰
- 운영시간(연중무휴)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30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 사거리 43면



○ 예정가격 : 3,111,120원

- 산출식

개별공시지가 평균가액	×	대부면적	×	대부요율	=	대 부 료
237,038(원/㎡)	×	(525㎡)	×	(25/1000)	=	3,111,120원

(공시일 : 2020.1.1.적용)

주차구획선 구 분	개별공시지가 평균가액	주차대수	1면당 주차면적	대부요율	합계
계		43			3,111,120
일 반	237,038	41	2m×6m	0.025	2,915,567
장애인	237,038	2	3.3m×5m	0.025	195,556

- 위탁료는 예정가격을 매년 산정하여 낙찰가율에 따라 부과

Ⅲ 그간 추진사항 및 운영현황

- 2019. 5. :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계획보고
- 2019. 6. :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결과 : 원안가결
- 2019. 7. : 노상주차장 유료화 행정예고
- 2019. 7. 31. : 위수탁 계약 체결
 - 대 상 :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기 간 : 2019. 8. 1. ~ 2020. 7. 31.
 - 위 탁 료 : 3,169,590원
- 2019. 8. 6. : 위수탁 계약 포기
 - 사 유 : 2019년 8월 1일 공영주차장 관리인(권영철)의 업무 중 사고(뇌진탕)로 인한 장기간 입원 치료 중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불가능

- 2019. 8. 19. ~ 30 :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 입찰 공고 및 선정
 - 위탁기관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위탁기간 : 2019. 9. 1 ~ 2020. 8. 31. / 1년간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 사거리 / 47면
 - 위 탁 료 : 4,530,000원

IV 향후계획

- 2020. 10. : 입찰 공고
- 2020. 11. 23. ~ 2023. 11. 22. : 위탁 운영

V 기대효과

- 장기주차방지, 중심상가 방문객 증가, 지역상원 활성화 유도
- 자동차 이용을 자제시키고, 주차면 회전율 상승을 통한 주차난 해소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확보의 선순환 형성
- 도심주차환경 불편해소와 인근상가 이용 고객 증가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2. 제안이유

- 가.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나. 농업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농촌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 사업자 : (주)양기마을 신재생에너지 대표 김효수
 - 사업기간 : 2020년 8월 ~ 11월(4개월간)
 - 발전용량 : 29.88kw
 - 사업비 : 66,000천원
 - 연간수익 : 7,000천원/정도

※ 수익금 사용 : 양기마을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
과 화합도모 등 목적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나. 재산의 표시

위 치	면 적	태 양 광 설치면적	용 량	사용허가신청자
가조면 기리 625-3(주차장)	699m ²	149m ²	29.88k w	(주)양기마을 신재생에너지 대표 김효수

다. 그간 추진사항

- 2019. 10. : 국비 공모 사업 선정
- 2020. 06. : 전기사업허가 법인 설립

라.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마. 위치도 및 현장사진



주소 : 거창군 가조면 기리 625-3(지목 : 주차장)



4. 참고사항(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제4항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에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용허가 신청자 선정과 마을 공동기금 사용용도(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2. 제안이유

- 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17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국농소 마을회 소속 농업회사법인 “강과사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으며,
- 나. 환경교육기관으로써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 위치 : 거창읍 가지리 188-1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17. 1. ~ 2020. 9.(3년 9개월)
 - 사업비 : 2,200백만원(기금 100%)
 - 시설현황

(단위 : m²)

구분	용도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비고
합계			796.29	796.29		
1층	교육장	철근콘크리트	499.29	114.84	지상 3층	
2층	카페, 작은도서관			197.30		
3층	환경교육장, 사무실			187.15		
별관	온실	철골	297.00	297.00		

※ 대지면적 : 1,451m² (약 440평)

나. 그간 추진사항

- '16. 9. : 공모사업 신청 【국농소마을회(강과사람)→군→낙동강청】
- '16. 12. : 2017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낙동강유역환경청)
- '17.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17. 12. : 토지보상 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8. 11. : 건축공사 착공
- '20. 7.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심사
- '20. 9. : 건축공사 준공 예정

다. 관리 및 운영계획

- 관리방법 : 위탁관리
-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 마을회 등에 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관리비용 : 미지원
 - 유료 교육프로그램 및 카페 운영을 통한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
- 운영주체 : 국농소마을회 소속 “강과사람”
 - 2017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 당선

라. 위탁개요

- 위탁범위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연장가능)
- 위 탁 료 : 미징수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17년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에 국농소 마을회 소속 “강과사람” 법인이 신청 및 선정됨에 따라,
 - 수계기금이 전액 지원되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위탁료는 미징수
- 위탁사무
 -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사업

4. 참고사항(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거창하천환경 교육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및 [별표4]에서 예외적이 경우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 아울러,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삭제 및 조신설 2020.5.6.)”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년간 『거창하천환경 교육센터』를 민간 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8.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2. 제안이유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약초유통센터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거함대로 3372
- 시설현황 : 부지 3,444㎡, 시설 1,243㎡
 - 세부시설 : 판매장 118㎡, 집하장 및 창고 900㎡, 전처리시설 225㎡

나. 위탁사무

- 시설 유지관리 : 약초유통센터 토지·건물과 기계 장비 유지관리
- 운영 관리 : 약초의 집하, 보관, 선별, 전처리, 소분, 저장, 판매 등

다. 그간 추진사항

- 2015년도 : 거합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16년도 :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준공, 공사 계약
- 2017년도 : 거창약초유통센터 착공 및 준공
- 2018. 7. :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 2018. 11.~12. : 입찰공고 3회 / 단독응모로 유찰
- 2019. : 약초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시설 보완 등
- 2020. : 약초 관계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 위탁운영 보완계획 수립

라.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1. 1. ~ 2023. 12.(3년간)
- 위탁범위
 - 시설 유지관리 : 약초유통센터 토지·건물과 기계 장비 유지관리
 - 운영 관리 : 약초의 집하, 보관, 선별, 전처리, 소분, 저장, 판매 등
 - 집하장·전처리장과 판매장 분리 위탁
- 수탁자 선정
 - 수탁자격 : 거창군 관내 약초생산자 단체·법인, 농업관련 비영리 법인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나. 향후계획

- 2020. 9월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2020. 10월 : 입찰공고
- 2020. 11월 : 적격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 2020. 12월 : 협상 및 협약 체결, 공증, 인계·인수, 고시
- 2021. 1월~ : 수탁자(단체) 위탁운영실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7년 완공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거창 약초의 생산성 및 품질관리 향상과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거창약초유통센터』를 민간위탁 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08.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2. 제안이유

- 가.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태양광 조성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 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가조 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 및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추진개요
 - 사 업 명 :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 사 업 자 : 사단법인 가조면생활체육협의회 대표 임채욱
 - 사업기간 : 2020년 8월 ~ 12월(5개월간)
 - 발전용량 : 84.66kw
 - 사 업 비 : 165,000천원

○ 연간수익 : 21,000천원/정도

※ 수익금 사용

: 가조 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우선 집행하여야하며, 추가 이익에 대하여는 체육회법인 제반 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또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사용

나. 추진사항

○ 2019. 9. : 도비 확정

○ 2020. 8. : 전기사업허가 추진 중

다. 재산의 표시

위치	면적 (㎡)	설치 (㎡)	설치용량 (kW)	사용허가신청자	비고
가조면 마상리 316-17(주차장)	728	126	24.9	사단법인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1호	
가조면 수월리 453(주차장)	2,242	149	29.88	사단법인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2호	
가조면 수월리 449-13(주차장)	1,835	149	29.88	사단법인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3호	

다. 향후 추진 계획

○ 2020. 9.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행복농촌과)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철거(원상복구) 비용 예치

○ 2020. 8. ~ 9. : 전기발전사업 허가(경제교통과)

4. 참고사항(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4항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가조 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물 활성화 및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가조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활성화 및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사용허가 신청자 선정과 향후 수익금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